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637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3종인 국토교통 연구개발 관련 하위 규정을 1건으로 통합·개편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 기본 법률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과 행정행위 주체, 용어 등 일치시키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쟁형 연구방식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고시)」에서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50% 범위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한도 삭제(제29조의2제3항)

다. “경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 사유 추가(제36조제4항)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전문기관은 이를 대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제37조 제1항)

마.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산정 기준을 정확히 명시(제43조)

바.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폐지(부칙)

사. 관련 규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참여연구원’을 ‘참여연구자’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전문연구사업자’로 변경(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 전화 : 044-201-3253 / 팩스 : 044-201-5520

○ 이메일 : devils77@korea.kr